


나의 신문고

 김건형 님 (비회원)

점수 안내 >

메인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

국민생각함

정책 알림 서비스

민원상담 신청결과

오류신고.이용문의


민원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모든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된 민원은 조회하기 위해 민원신청번호 또는 본인인증수단(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신청·접수

 2 실과 분배

 3 담당자 배정

 4 완료

신청 정보



민원 신청 내용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0-1148242
접수일시	2023-10-30 12:48:51
담당자(연락처)	박상현 (044-201-3580)
처리예정일	2023-11-0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3-11-02 16:07:3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초급품질관리대상 공사인 경우 인건비 반영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2호 나목에 의하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는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 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서 초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1인을 배치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은 시험관리인으로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 된 것으로 보고"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로 계상 할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상현 주무관(044-201-35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2-02 16:07:36

첨부 파일

 만족도 평가하기